

### 3. 「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」 개정

자료제공 : 한국은행

현행	개정	비고
<p>제1조~제2조 (생략)</p> <p>제3조(여신의 금지) 금융기관이 &lt;별표&gt;의 “여신금지부문”에 대한 여신을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불건전한 여신으로 본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여신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규정과 한국은행총재가 따로 정하는 총액한도 대출관련 규정에 의하여 취급하는 여신</li> <li>2.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재해를 입은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위해 한국은행총재가 따로 인정하는 여신</li> <li>3. 「주택건설촉진법」에 의거 발행되는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지급보증</li> <li>4. 「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농공단지 개발사업관련 여신</li> </ol> <p>제4조(담보취득의 제한) 금융기관은 여신취급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담</p>	<p>제1조~제2조 (현행과 동일)</p> <p>(삭제)</p> <p>(삭제)</p>	<p>- 여신금지부문폐지</p> <p>- 담보취득의 제한 폐지</p>

<p>보로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한국은행 총재가 중소기업지원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연면적의 1/2이상이 &lt;별표&gt; 제3호의 여신금지업종에 제공되는 건물 및 당해대지</li> <li>2. 연면적의 1/2이상이 임대되고 있는 건물 및 당해대지(주택 및 당해대지 제외)</li> <li>3. 「법인세법시행규칙」 제18조에서 정한 법인소유 비업무용부동산 및 동 「규칙」을 준용하여 판정된 개인기업을 영위하는 자의 비업무용부동산</li> <li>4. 「토지초과이득세법」 제8조에서 정한 개인소유 유희토지 등</li> <li>5. 「지방세법시행령」 제84조의3에서 정한 사치성재산</li> <li>6. 제3자명의 부동산</li> </ol> <p>제5조~제8조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설)</p>	<p>제3조~제6조 (현행과 동일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규정은 1998. 1.26부터 시행한다.</p>	<p>- 조례상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시행일자 명시</p>
---	--	---

현행	개정	비고
<p>&lt;별표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여신금지부문</p> <p>1. 토지의 매입</p> <p>    다만, 다음 각 호의 용도를 제외한다</p> <p>    가. 서민주택건설용</p> <p>    나. 여신취급일(다만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중 선분양되는 산업단지의 입주예정업체인 경우에는 토지분양대금 최종회차분 납입일과 산업단지조성 완공일중 조기도래되는 날)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착공될 공장건설용</p> <p>    다. 실수요자의 농지용</p> <p>    라.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은 학교법인의 교지용</p> <p>    마. 비영리법인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하는 사옥건설용</p> <p>    바. 「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」에 의한 제1종시설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건설사업용</p> <p>2. 세대당 100호를 초과하는 주택(아파트 포함), 오피스텔, 스키장 및 유원지(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업소 제외)의 건설 또는 매입과 콘도미니엄의 매입</p>	<p>(삭제)</p>	<p>- 규정 제3조 삭제에 따른 &lt;별표&gt;</p>

현 행		개 정	비 고
3. 다음의 업종에 대한 여신			
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 류 번 호	업 종 명		
3694중	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		
5521중	건평 또는 대지 330㎡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. 다만, 다음의 경우는 제외 1.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2. 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하여 지정된 관 광지,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3. 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“좋은식단” 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		
5522	주점업		
70	부동산업(다만, 공장건물 및 서민주 택 임대업에 대한 여신과 「도·소매 업진흥법」 제6조에 의한 시장개설자 의 당해시장 임대업에 대한 시장신 축 또는 증·개축자금은 제외)		
92191중	「댄스홀」, 「댄스」 교습소		
92434	골프장운영업		
92496	도박장운영업		
93092중	증기탕업 및 안마시술소		

## 해설

## I. 여신금지제도 폐지 배경

최근 금융의 개방화와 자율화 진전 및 경제·사회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금융기관의 자금 운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여신금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자율적 판단으로 여신을 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.

여신금지부문을 폐지하더라도 이 부문에 대한 은행의 대출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

- 부동산실명제 실시, 부동산 종합전산망 구축 등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데다 최근 부동산거래가 크게 부진하고 가격도 하락세
- 외환위기이후 근검·절약 분위기 확산으로 사치·향락성 소비도 크게 위축

△ 앞으로 한정된 금융자금이 부동산투기와 사치·향락성 산업에 지원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융면에서의 규제보다는 세제·행정을 통해 유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

## II. 기대효과

△ 금번 조치로 금융기관의 여신 및 담보취득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없어졌으므로 금융기관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여신을 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앞으로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

### Ⅲ. 폐지대상 여신금지현황

#### □ 여신금지부문

1. 토지의 매입(단 서민주택건설용, 공장건설용, 실수요자 농지용, 학교 교지용, 비영리법인 사옥용, 제1종시설사업 및 도로건설사업용은 제외)
2. 세대당 100㎡초과 주택의 건설 또는 매입, 오피스텔, 스키장 및 유원지의 건설 및 매입, 콘도미니엄업의 매입
3. 여신금지업종
  - △ 불건전오락기구제조업, 주점업, 댄스홀 및 댄스교습소, 골프장운영업, 도박장운영업, 증기탕업 및 안마시술소, 부동산업, 건평 또는 대지 330㎡ 초과 식당업
    - 부동산업의 경우 공장건물·서민주택 임대업 및 재래시장 임대업은 제외
    - 식당업의 경우 기관구내식당, 관광지·관광단지·관광특구소재 식당업, “좋은식단” 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제외

#### □ 담보취득 제한(중소기업 제외)

1. 연면적의 1/2 이상이 여신금지업종에 제공되는 건물 및 당해대지
2. 연면적의 1/2 이상이 임대되고 있는 건물 및 당해 대지(주택 및 당해대지 제외)
3. 법인소유 비업무용부동산 및 개인기업 영위자의 비업무용부동산
4. 개인소유 유희토지
5. 사치성재산
6. 제3자명의 부동산

주택회보